

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743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5. 24.

발의자 : 설훈 · 위성곤 · 심재권  
이인영 · 이동섭 · 채이배  
이찬열 · 신창현 · 박정  
박선숙 · 김영호 · 고용진  
김철민 · 유동수 · 정인화  
노웅래 · 이용득 · 박주민  
정재호 · 김상희 · 김병기  
신동근 · 이수혁 · 안민석  
김종민 · 최운열 · 유승희  
송옥주 의원(2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,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  
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  
5항 및 제12조의2제2항).

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전단 중 “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”를 “수의사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,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“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”을 “동물병원, 축산 농장, 동물원 또는 수족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진단서 등) ① ~ ④ (생약)</p> <p>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<u>수의사는</u>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, 신고방법,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, 진료부 작성 및 보고, 교육,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진단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의사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,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-----.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2조의2(처방전의 발급 등) ① (생약)</p> <p>② 제1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·투약한 경우에는 진료</p>	<p>제12조의2(처방전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